

표준모델 사용인증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이하 “모니터링 세부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조의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모델에 대하여 「모니터링 세부운영지침」 제18조 제7항에 따른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회원으로 규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칭한다.
2. “표준모델”이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인정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된 것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이 규정에 의하여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이하 “사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조합의 회원을 말한다.
4. “인증업자”란 이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 사용인증서를 발급받은자를 말한다.

5. “품목”이란 건축자재를 구분하는데 있어 그 구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유사한 재료 성분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 제3조 제1호의 기관을 말한다.
7.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 (이하 “사용인증”이라 한다.)”이란 조합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모델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교육”이란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 제18조제7항에 따른 교육으로 신청자가 이 규정에 따른 사용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9. “품질담당자”란 조합이 실시하는 품질교육을 수료한 자를 말한다.
10. “분담금”이란 조합이 표준모델 유효기간 갱신, 표준모델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신청자, 심재업자 또는 인증업자에게 요청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사용인증절차 및 일반사항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모델 사용인증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2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고,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위원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 시 출석 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최소 3인 이상 참석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 진행상 심의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단순한 기술적인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에 소속된 자 1인을 간사로 운영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조합은 운영위원회 참여위원에게 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여비규정의 상근임원 수준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조합은 필요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를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인증업자 및 심재업자에 대한 표준모델 사용자격 일시정지, 취소 등에 대한 사항

2. 신제품(심재 포함) 및 유사·과생 제품(심재 포함)에 대한 사용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이 인증 및 심재의 품질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원활한 품질관리등 행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⑧ 조합은 기술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기관, 관련단체 및 산업계 등을 특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4조(사용인증 신청) ① 사용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모델 사용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용인증 신청 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부 서류 내용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내용 변경 신청은 1회에 한 제6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한 내용 변경은 신청자 변경 요청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첨부 서류의 내용을 변경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 내용 변경 요청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등 신청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청자는 사용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구조 또는 제품의 사용인증이 완료되기 이전에 표준모델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제5조(사용인증 신청 등의 제한)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자는 사용인증 절차를 진행 중 중복 신청할 수 없다.

② 조합장은 신청자가 사용인증을 신청하였을 경우 별표 4에 따라 신청자격 확인 점검기준에 따라 사용인증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증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사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인증 취소 사유에 따른 신청 제한 기간은 별표 3에 따른다.

- ④ 별표 3의 사용인증 취소 사유 이외에 제6조제2항의 사유로 사용인증신청을 반려받은 경우에는 품질능력 확보 등을 위해 사용인증 신청이 반려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신청하거나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 ⑤ 표준모델 사용인증은 취소된 즉시 사용할 수 없다.
- ⑥ 인증업자는 제12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증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품목에 대한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⑦ 인증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동일 품목으로 표준모델 사용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 ⑧ 제22조에 따른 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신청의 보완 및 반려)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신청자가 제4조제1항의 사용인증 신청 시 별표 1에 따라서 제출한 첨부 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 2. 제9조에 의한 현장실사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신청자가 사용인증 신청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 2. 조합이 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3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완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회 10일 이내 보완, 총 30일 이내 보완 완)
- 3. 제7조제1항의 사용인증절차에 따른 서류 검토 중 제4조 및 제5조 각 항

의 신청자격 제한 사유를 확인한 경우

제7조(현장실사) ① 조합은 신청자의 사용인증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권고 또는 표준모델 사용인증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현장실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현장실사는 별표 5에 따른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인증 심사) ① 조합은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사용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표준모델에 대한 이해
2. 신청자의 원재료 및 제품에 대한 추적관리 가능여부
3. 신청자의 제품에 대한 자체적 품질관리와 제품검사
4. 신청자의 제품의 상세 설명서, 시방서, 품질규격관리의 적정성 등

제9조(인증 결과 등의 통보) ① 조합은 제4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표준모델의 사용인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세부내용(상세도면, 시방서,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
2.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별지 제3호 서식)
3. 제품품질관리 사항 (원재료와 제품의 규격 등)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용인증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표준모델 사용인증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6을 따른다.

제3장 사용인증의 관리

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업자는 표준모델 제품의 사양을 건축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별표 7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준모델 사용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별표 7에 따른 사용인증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을 표시를 할 때는 인증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로와 세로를 각각 15mm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8조의 인증심사를 거쳐 사용인증을 받은 표준모델의 사용인증 유효기간은 표준모델 인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②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업무 등을 위탁한 품질검사기관에서 진행한 모니터링에서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사용인증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인증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부터 표준모델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자에 사용인증이 일시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해야 인증업자로서 표준모델 사용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인증업자의 사용인증이 일시정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의 사유를 해소한 날로부터 인증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12조(인증변경 및 양도·양수) 인증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내용을 별지 제2호에 상세히 작성하여 조합에게 인증 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1.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 포함)
2.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
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증 내용의 변경

제13조(인증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인증업자는 사용인증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생산·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구성재료·원재료 등의 검사
2. 제조공정관리
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제14조(생산·판매실적 관리 및 제출) ① 인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준모델 등을매월 25일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 및 판매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모델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실적
2. 품질관리서 사본
3. 매주 1회 샘플링한 동일 LOT의 거래명세서, 생산일지, 제품검사대장, 공정관리일지, 인수검사성적서, 심재 및 강판의 밀시트

제4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제15조(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조합은 필요시 표준모델의 제조현장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현장을 점검하되, 인증업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조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1. 원재료·완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2. 제조공정관리기준
3. 원재료·완제품에 대한 로트번호 부여
4. 건축자재 표면의 정보표시

③ 조합은 신청자가 사용인증을 받은 표준모델 제품의 품질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제조현장 점검시에 시료 또는 시험편을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표준모델과 동일 여부 검토 등

④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현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17조 및 제18조의 일시정지 및 사용인증 취소의 위반 사항이 조합에서 운영하는 불법건축자재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2. 운영위원회에서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을 요청할 경우

⑤ 인증업자는 조합이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료 채취 등 표준모델 품질관리상태 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조합은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동행하여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조합은 품질관리 확인점검시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에 따른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요청) ① 조합은 제17조의 일시정지 제18조의 인증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건축현장 또는 불법 건축자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축현장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에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표준모델 사용인증의 개선 및 취소 등

제17조(인증의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 ① 조합은 별표 3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개선요청 또는 사용인증을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요청 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조합에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인증의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증이 일시 정지된 표준모델은 일시정지된 날부터 정지가 해제된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⑤ 조합은 제2항의 개선요청 또는 제3항의 일시정지의 시정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또는 제조현장 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인증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조합은 별표 3에 따라 사용인증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인증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중인 경우에는 사용인증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사용인증이 취소된 표준모델은 취소된 날부터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19조(인증 조치 등의 통보) ① 조합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인증

의 일시정지 또는 일시정지 사유의 해소 및 사용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0조(품질관리 보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30일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체별 생산 및 판매실적
2. 업체별 표준모델 LOT 추적 샘플링 결과

제21조(규정의 관리) ① 조합은 이 규정의 제·개정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회비) ① 조합은 전문기관이 공고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 등의 세부운영지침」에 명시된 표준모델의 유효기간의 갱신 및 표준모델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신청자, 심재업자 및 인증업자에게 특별회비등 관련 분담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의 분담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되 신청자, 심재업자 및 인증업자와 협의를 통해 금액과 납입시기를 결정한다.

[별표 1]

표준모델 사용인증신청 첨부서류

신청도서	기재사항
1. 설계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요약표 ○ 구조설명도 (조인트 형상, 파형 종류 등) ○ 시방서
2. 품질관리 설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배합비 포함) ○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 제조·검사설비 목록(주요설비 표시) ○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3. 신청자의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혁, 공장주소 및 생산·판매실적 ○ 품질관리자(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품질 교육 이수증 [별지 제6호])
4. 기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 원재료 밀시트, 원재료 공인성적서 ○ 신청자가 의뢰한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의뢰서 제출 후 사용인증 3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 사내규정 목차(규격번호 및 개정번호 포함) ○ 품질유지서약서 [별표 2]

[별표 3]

사용인증의 취소, 일시정지, 개선요청에 관한 세부기준

위	관련 규정	1차 제재조치 (기한)	2차 제재조치 (기한)	3차 제재조치 이상	취소후 신청제한 기간
1.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 즉시 취소					
1-1. 규정에 따른 사용인증 및 품질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방해, 거부, 위력 등을 행사하여 사용인증 및 품질관리의 진행 일정 및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하는 경우#		인증취소 (회원자격 상실)			24개월
1-2. 조합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분담금 납부를 1년 이상 지체하는 경우		인증취소			24개월
2. 인증업자의 부정행위 및 성능 미확보가 확인된 경우 : 즉시 취소					
2-1. 원재료의 시험성적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행위 방법으로 성적서를 획득한 경우#		인증취소	-	-	24개월
2-2. 세부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 인증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인증취소	-	-	24개월
2-3. 인증대상이 아닌 일반제품을 인증대상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취소	-	-	24개월
2-4. 사용인증이 일시정지 중 인증제품을 판매한 경우#		인정취소	-	-	12개월
3. 자체 품질관리를 허위로 하거나 품질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 일시정지					
3-1. 자체 품질관리의 실시 결과를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제15조	일시정지 (30일)	인정취소	-	12개월
3-2. 인증제품에 인증표시를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제12조	일시정지 (30일)	인정취소	-	12개월
3-3. 제조현장 품질확인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는 경우 #	제18조 제19조	일시정지 (30일)	인정취소	-	12개월
4. 인증업자의 품질관리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요청					
4-1. 제조현장 또는 건축공공장 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제19조	개선요청 (30일)	일시정지 (30일)	인정취소	6개월
4-2. 인증 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14조	개선요청 (30일)	일시정지 (30일)	인정취소	6개월
4-3.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6조	개선요청 (30일)	일시정지 (30일)	인정취소	6개월

5. 심재의 품질관리 개선 등 사항이 확인된 경우 : 개선요청

5-1. 규정에 따른 사용인증과 관련하여 심재의 품질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방해, 거부, 위력 등을 행사하여 사용인증 및 품질관리의 진행일정 및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하는 경우 #		일시정지 (6개월)	인정취소	6개월	
5-2. 세부인증내용의 원재료(심재)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심재)로 만들어 인증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		일시정지 (6개월)	인정취소	6개월	
5-3. 제조현장 또는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심재의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시정지 (6개월)	인정취소	6개월	
5-4. 인증대상이 아닌 일반제품을(심재) 인증대상제품(심재)로 판매하는 경우 #		일시정지 (3개월)	일시정지 (3개월)	인정취소	
5-5. 난연제등 배합비율 관련한 표준 배합비 적합도 및 준수사항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요청 (30일)	일시정지 (30일)	인정취소	

※ # 표시의 경우는 제3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위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조치 등이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조치를 의미함

예) 5-5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개선요청, 30일 이내에 개선요청 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차 일시정지, 3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차 인정취소

[별표 4]

신청자격 확인 점검기준

1. 자격사항
1.1 사용인증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가
1.2 신청자가 표준모델 인증대상 품목 및 주요 재료·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인가
1.4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에 동일 품목으로 인증을 신청한 적이 있는가
1.5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에 아래의 사유로 인정 취소된 적이 있는가
가. 품질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나. 사용인증규정 별표3의 제3호 인정업체의 품질관리 개선 등의 경미한 사항을 개선요청 받아 일시정지 되어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1.6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에 아래 사유로 인정이 취소된 적이 있는가
가. 일시정지 중인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나. 사용인증규정 별표2의 제2호 인정업체 자체 품질관리를 허위로 하거나 품질점검을 방해 또는 거부하여 일시정지 되어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1.7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에 아래의 사유로 인정이 취소된 적이 있는가
가. 신청 또는 인증 내용과 상이한 제품을 표준모델 대상제품으로 유통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나. 세부 인정내용의 원재료의 품질기준과 상이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인증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다. 인증받지 않은 일반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라. 인증내용의 배합비와 상이한 배합비로 만들어진 제품을 인정제품으로 판매한 경우
1.8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에 사용인증규정 제6조제2항2호에 의해 인정신청을 반려받은 적이 있는가
1.9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에 사용인증규정 제6조제2항제4호에 의해 인정신청을 반려 받은 적이 있는가
1.10 인정업자가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하였는가
가. 사용인증규정 제17조에 따른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 보고일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개선요청의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
나. 사용인증규정 제17조에 따른 제조현장 확인결과 제19조에 따라 품질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

[별표 5]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표

인 증 일 자		전	화
주 소			
확 인 자			
점 검 자			
총 합 의 건			
점 검 자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인 증 업 체	소속 :	직급 :	성명 : (인)

1. 원재료 품질관리

구 분	점검 확인 내용
원재료 품질항목 및 기준	1.1 각 원재료에 대한 품질항목, 기준 및 시험방법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표준모델 세부인정내용과 일치하는가
원 재 료 수입검사	1.2 원재료 수입검사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기관성적서, 수입검사성적서, 제조처성적서를 관리하고 있는가
원 재 료 자재관리	1.3 재료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량 · 사용량 · 잔량이 확인 가능한가

2. 제조공정 품질관리

분	점검 확인 내용
제조공정 기록관리	2.1 대한 제조절차/관리방법 등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서 (또는 인정) 내용과 일치하는가
	2.2 공정관리일지 등 제조공정기록(배합관리, 원재료 투입량 및 로트 포함)을 작성 및 유지 관리하는가
부적합품 및 불만처리	2.3 원재료/공정/제품의 품질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방안(반품 등) 이 사규 또는 문서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2.4 소비자 불만 처리에 관한 내용이 사규 등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제품 품질관리

구 분	점검 확인 내용
제품의 품질항목 및 기준	3.1 제품에 대한 품질항목, 기준 및 시험방법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표준모델 세부 인정내용과 일치하는가
제품검사	3.2 제품검사에 대한 검사항목별 주기(시기), 로트 등 검사방법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성적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제품관리	3.3 제품의 출하대장 등 판매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시공현장명/주소/제품 로트번호 등을 관리 및 유지를 하고 있는가

4. 제조설비 관리

구 분	점검내용 및 확인내용
제조설비 관리절차	4.1 제조설비 목록이 사규 등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설비점검	4.2 제조설비별 이력이 작성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교정관리	4.3 제조설비 중 교정설비 구분, 교정주기를 문서로 명시하고 교정을 실시하였는가

5. 검사설비 관리

분	점검 확인 내용
검사설비 관리절차	5.1 목록 및 관리방법이 사규 등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설비점검	5.2 검사 설비별 이력이 작성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가
교정관리	5.3 검사설비 중 교정설비 구분, 교정주기가 문서로 명시하고 교정을 실시하였는가

6. 로트번호 부여 및 인정관리

구 분	점검 확인 내용
로트관리	6.1 제품 및 원재료의 로트부여/관리에 대한 내용이 사규 등 문서로 명시되어 있는가
	6.2 표준모델 대상 제품의 생산· 판매실적을 분기별로 조합에 제출하는가
	6.3 표준모델 대상 제품으로 판매된 실적에 대하여 로트추적이 가능한가
	6.4 표준모델 대상 제품에 대해 [별표3]의 1호의 부정행위(1-1~1-5)를 한 경우가 있는가
인정표시	6.5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제조현장 주소변경, 주요시설의 변경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적정하게 변경신청을 하였는가
	6.7 인증표시의 내용이 [별표8]과 일치하는가


표준모델의 인정번호 부여방법 (전문기관용 및 신청자/관리자용)

표준모델 세부인정번호 : KCSM																													
K	C	S	M	□	□	□	2	2	0	1	0	1	1	:	0	1	0	2	0	0	0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인정기관용 부여방법																													
: 표준모델을 표시하는 영문대문자 4자리를 명시한다. (KCSM : KICT Certified Standard Model)																													
㉠ : 표준모델명 (예 : 샌드위치패널 → Sandwich-Panel : SP)																													
㉡ :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년도를 명시한다. (예 : 2022년 → 22)																													
㉢ :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월을 명시한다. (예 : 1월 → 01)																													
㉣ :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일자를 명시한다. (예 : 1일 → 01)																													
㉤ : 표준모델 제정 순번을 명시한다.																													
신청자* /관리자용* 부여방법																													
㉠ : 표준모델을 적용(인정) 받은 월을 명시한다. (예 : 1월 → 01)																													
㉡ : 표준모델을 적용하는 지역의 지역번호 [예시] 서울(020),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세종(044), 경기(031), 강원(033), 충북(043), 충남(041), 전북(063), 전남(061), 경북(054), 경남(055), 제주(064)																													
㉢ : 표준모델 적용 순번을 명시한다.																													
* 및 관리자는 표준모델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단체임(협회 또는 조합 등)																													

[별표 7]

표준모델의 사용인증표시

사용인증제품 표면 또는 포장단위에 사용인증 인증마크, 사용인증번호, 사용부위, 사용인증업체명, 제조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표준모델
	(인증번호)
	(사용부위) ¹⁾
	(회 사 명)
	(제조현장주소)

1) 사용부위는 인증받은 구조 또는 제품이 사용되는 부위를 말한다.

표준모델 사용 신청서

※ 다음 페이지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비고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품질담당자)	
대표자		/	
공장소재지(등록 주소)		전자우편주소 (품질담당자)	
신청내용		사용부위	조인트 종류
		내부, 외부, 지붕	내부 외부 지붕
<input type="checkbox"/> 조인트 종류 1.노물드, 2.포켓(클립) 3.볼트레스			구분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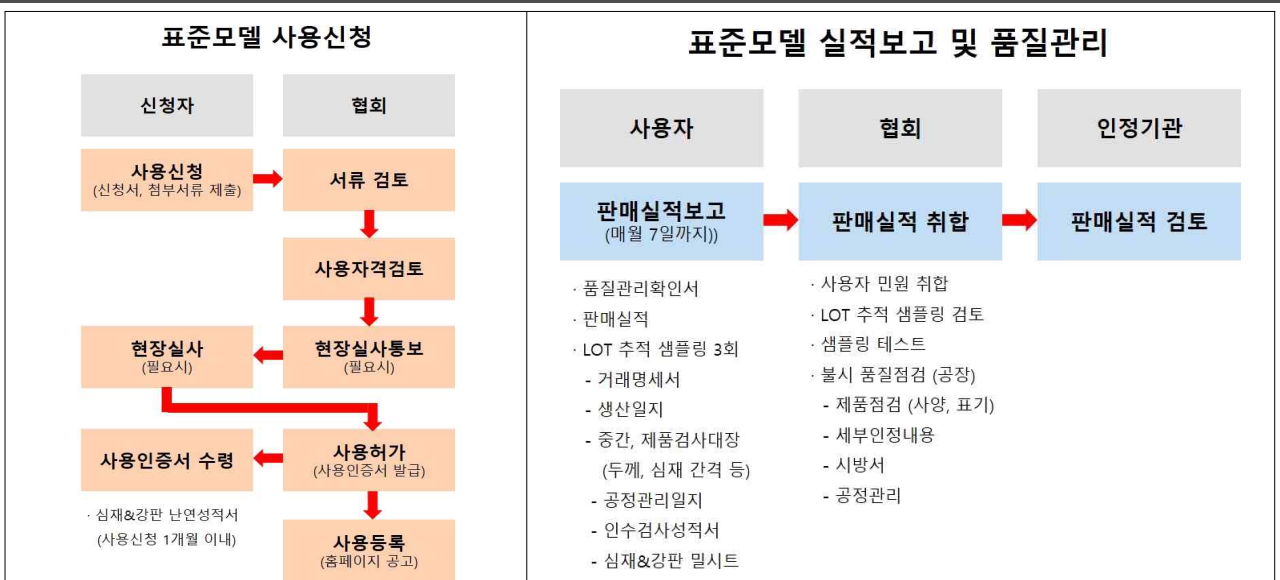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복합자재 표준모델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구조요약표 나. 구조설명도(조인트 형상, 파형 종류) 다. 시방서 2. 품질관리 설명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품 및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배합비 포함) 나.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조·검사설비 목록(주요설비 표시) 라.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검사기준 포함) 3. 신청자의 사업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혁, 공장주소 및 생산·판매실적 나. 품질관리자(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품질교육 이수증) 4. 기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나. 원재료 밀시트, 원재료 공인성적서 다. 신청자가 의뢰한 제품 및 원재료 시험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의뢰서 제출 후 사용인증 3개월 이내 본 시험성적서 제출 라. 사내규정 목차(규격번호 및 개정번호 포함) 마. 품질유지서약서
---------------------	--

■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표준모델 사용인증규정 [별지 제3호서식]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서

- 인정번호 :
- 상품명 : (예시) (업체명) 준불연 EPS패널(100T~260T)
복합자재 표준모델
- 표준모델 형식 : 복합자재 [준불연 강판+ 준불연 EPS(측면화재확산 방지구조)]
- 인정업체 및 대표자 :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대표:최국현)
- 신청자소재지 : (업체주소)
- 유효기간 : 2023년 00월 00일까지 (표준모델 인정서와 동일 유효기간)
- 표준모델 업체 사용인증번호 :
- 표준모델 시공 현장 확인 :

표준모델 사용 업체명	(업체명)	
표준모델 사용 대표자	(업체 대표자명)	
표준모델 사용 업체 주소	(사업장 주소)	
표준모델 시공 부위	◦ 내부칸막이 - 자립형 ◦ 외벽 - 골조형 ◦ 지붕	직인 (표준모델 사용 업체)

20 년 월 일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직인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점검에 따른 [보완 개선] 요청서

:

	소속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신청(인증)업체	소속	직급	성명	(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개선] 요청 내용	
1. 원재료 품질관리	▪ -
2. 제조공정 품질관리	▪ -
3. 제품 품질관리	▪ -
4. 제조설비 관리	▪ -
5. 검사설비 관리	▪ -
6. 로트번호 부여 및 인정관리	▪ -
7. 기타	▪ -

제출기한	1. 요청일로부터 90일(1회당 30일 이내) 이내 2. 개선 요청일로 30일 이내에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표준모델 사용인증이 일시정지 됩니다.
-------------	---

발급번호 : 2023. 00. 00

표준모델 품질교육 이수증

업 체 명 :

성 명 :

교 육 일 자 : 2023년 01월 10일

유 효 기 간 : 발급일로 부터 1년

위 사람은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표준모델 사용인증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품질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조합장